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 사례

1999. 11. 3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부관훼리(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5부사0684, 9905부사0779)	해상화물운송업체인 부관훼리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소재 C&C통운(주)를 자신의 육상화물운송업체로 '98. 8. 13. 지정하고, 이 사실을『육상운송회사 계약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에 담아 (주)아진종합식품을 포함한 자신의 주요 고객 100여개 업체에게 '98. 8. 27. 보낸 후,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는 (주)아진종합식품 등에게 C&C통운(주) 및 (주)동방을 이용하도록 강제하여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98. 12. 31.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운송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목적하에 '99. 1. 16. (주)아진종합식품을 비롯한 21개 화주들에게 자신과 계약된 운송회사 또는 양사가 합의 지정한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업체인 (주)환광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에 대하여는 자신의 컨테이너를 배정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주)환광을 이용하여 육상운송을 원하는 화주인 (주)두창산업, 성민해운(주), (주)아진종합식품에게 자신의 컨테이너를 제공하지 않아 화주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게 하였으며, 자신에게 선적하는 수출화물의 약 90% 이상을 (주)환광을 이용하여 약 10년간 육상운송해오던 약 20여 개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통관대행서비스업체인 상화통상에게 '98. 10월경 수차례에 걸쳐 C&C통운(주)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였고, '99. 1. 16 이후부터 (주)환광에게 컨테이너를 배정해 주지 않아 상화통상이 자신에게 선적하는 수출화물의 90% 이상을 자신이 지정한 C&C통운(주)를 통하여 육상운송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99. 1. 16자 안내문을 받은 화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75백만원

1999. 12.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제주지역 9개 전세버스운	제주교통(주), (주)삼보교통, (주)서진교통, (주)한보교통, (주)뉴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송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05광사0696)	<p>대원관광, (주)남도교통, (주)청구교통, 대홍교통(주), 삼다교통(주)는 '99. 2. 25. 제주지역소재 식당 일우가든에서 전세버스운송요금의 정상화, 각종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이용객에 대한 원활한 차량제공 등 전세버스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한 후 이를 위하여 2개의 컨소시엄(탐라, 한라)을 구성하고, 3. 2. 각 컨소시엄 참여업체별로 전세버스운송요금 및 차량의 예약·배차에 관한 컨소시엄운영규약 및 세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3. 2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동 규약 및 지침에 차종별로 전세버스운송요금과 통근운송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동 규약 및 지침에서 컨소시엄 구성업체간 차종별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차량예약을 컨소시엄 사무실에서만 받기로 하고, 각 구성업체 차종별 보유대수 비율과 예약상황을 따라 배차그래프를 작성하여 구성업체간 균등배차가 될 수 있도록 윤번제로 배차순번을 적용하면서, 구성업체가 개별적으로 예약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해당업체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선 배차시키되 어떤 업체가 보유차량대수의 130%를 초과하는 예약분에 대하여는 예약을 직접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운행할 수 없고 보유차량대수대비 배차율이 100%에 미달한 업체에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를 실시하였으며, 한편 동 규약 및 지침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사별로 1억원의 어음공증협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3. 4. 공증하고 3. 10. 컨소시엄 구성업체별로 공동사무실을 개설하여 3. 21.부터 동 규약 및 지침에서 정한 전세버스운송요금 및 차량의 예약·배차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4. 27. 탐라컨소시엄을 자진탈퇴한 서진교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10. 20. 어음공증협약을 실효시켜 제주시지역 전세버스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p>	<p>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제주지역을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교통주식회사: 2,000 · 주식회사삼보교통: 1,300 · 주식회사한보교통: 2,600 · 주식회사뉴대원관광: 2,200 · 주식회사남도교통: 2,100 · 주식회사청구교통: 2,200 · 대홍교통주식회사: 2,900 · 삼다교통주식회사: 2,800

1999. 12.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신의 부산광역시지부 회원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9908단체1207)	<p>이 '99. 1. 14. "가격파괴 회계사무실 수수료 가격인하" 제하의 광고전단을 부산지방의 업체에 배포하면서 기장, 세무조정 및 장부대 수수료 등을 타회계사무소의 금액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임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하자, 보수의 수준과 이에 대한 광고행위는 개별공인회계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원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타회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 12.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종전의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이 폐지되고 주식회사와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갯수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하여 현저히 적은 보수로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리베이트 수수료의 부당한 감사수임 등을 예방하여 감사수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2.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사업무수임질서 확립방안」을 제정하고 3. 2. 전회원에게 통보하였는데,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개별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의 수임여부나 감사보수의 결정 등을 스스로 판단할 사항인데도, 동 방안에 부당한 업무수임행위의 내용으로 직전에 다른 감사인을 위촉한 자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 직전의 다른 감사인을 교체한 이유를 검토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수임한 경우와 감사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보수로 업무를 수임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업무수임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업무수임행위고발센터」를 공인회계사회내 회원부에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고 고발 접수시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 부당한 업무수임행위로 밝혀질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활동제한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방안의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도록 함</p>

1999. 12. 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사건(9906광사0894, 9908광사1206)	<p>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99. 5. 17. 전라남도 목포시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4명중 발급신청인 18명이 5. 17. 및 5. 19.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사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조합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16명의 신규면허자에 대해서는 5. 18.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즉시 발급해주었으면서도, 자신의 산하조직인 목포시지부에 관련업무를 위임하였음을 이유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동 자격증명을 교부해 주지 않았고, 발급신청인들이 5. 16., 5. 26. 및 6. 17. 등 3차례에 걸쳐 송달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수취거절하였으며, 발급신청인들이 목포시지부에 5. 18. 및 5. 19. 등 2차례에 걸쳐 동 자격증명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동 지부는 지부에 가입을 하면 동 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즉시 발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 후 목포시지부는 18명의 발급신청인들 중 16명에 대하여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후 동 자격증명을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아 발급하였고 나머지 발급신청인 2명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조합가입의사를 전달받고 동 자격증명을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아 발급하는 등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발급신청인들을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지연하여 전라남도지역의 개인택시운송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7. 14. 조합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지부는 조합원의 지부탈퇴서 수리나 제명처분할 때에는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하여 7. 16.부터 시행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및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 지부를 통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도록 함</p>

1999. 12.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오비맥주(주)의 기업결합제	오비맥주주식회사는 회생이 불가피한 회사와의 기업	◎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이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9910기결1449)	결합인 경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가 아님에도 '99. 7. 30. 진로쿠어스맥주(주)의 매각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고 8. 6.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그 주식취득 계획을 9. 6.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11. 4.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기업결합행위는 시장집중도를 국내 맥주제조3사에서 2사로 심화시키며, 맥주산업의 특성상 관련시장에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해외경쟁의 도입이 미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위반	되는 날까지 해당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맥주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1년간 연장하여 적용토록 함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 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 위에 대한 건 (9907단체1111)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99. 2. 1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1999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전세버스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준수하자는 취지로, '99년도 일반단체요금 및 학생단체요금을 각각 '98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여 '99. 4. 1.부터 시행 하되 요금준수방안은 "경영개선분과위원회"에서 별도 모색하기로 결의한 후, 동 결의에 따라 작성한 각각의 요금조견표를 '99. 3. 3. 구성사업자에게, 3. 22. 관내 각급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고, '95년 요금자율화 이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전세버스요금조견표를 매연도마다 각각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 각 구청이 발주하는 '99년도 예비군수송버스 단가입찰에서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경영개선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각 구청의 입찰 전에 예비군수송을 희망하는 오진관광 등 22개 업체의 "영업부장회의" 등을 거쳐 각 구청별로 주관사 1개와 참여사 2개를 각각 지정한 후, 이에 따라 성동구 등 21개 구청에서 '99. 2. 22.부터 4. 20. 사이에 실시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사전에 지정한 업체들을 참여하게 하거나 입찰이 끝난 구청의 낙찰결과를 보아 참여업체를 재조정하여 각각 해당 구청의 입찰에 응찰 또는 수의계약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 예비군수송버스 단가입찰 참여회사를 조정하여 그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 2개 구청을 제외한 성동구 등 19개 구청에서 예비군수송버스업체들은 예년에 비해 최고 75.4%의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p>◎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말고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한 전세버스요금표를 즉시 회수하여 파기토록 하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와 전세버스요금표를 통보한 관내 각급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10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자신의 단독명의로 자신이 소재하는 지역의 2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각각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6,8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시행하는 '99년도 공무원통근버스운행 단가입찰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에 의한 넘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98. 11. 20. 조합회의실에서 경영개선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구역별 입찰참여업체를 사전조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입찰등록 마감당일인 '98. 11.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소재 롯데관광 회의실에 (주)한남관광 등 18개사의 영업부장을 참석토록 하여 총 11개 운행구역 중 10개 구역에 각각 2~3개사씩 입찰참여회사를 지정하여 '98. 11. 30. 실시된 동 입찰에서 제11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에 각각 지정업체가 동 입찰에 응찰하는 방법으로 현대관광 등 10개사가 낙찰율 최저 93.77%에서 최고 98.94%의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게 하는 등 서울지역 전세버스운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1999. 12.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메가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7구사1082)	메가텍은 자기가 제조·판매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인 메가텍Ⅱ를 '99. 1월에서 7월까지 농민신문 등의 일간지와 월간지와 전단을 통해 광고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기름값 반이면 된다", "연료절감 60%", "면적에 관계없이 난방OK"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메가텍Ⅱ가 타제품보다 열효율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농민신문」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포항지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건 (9908구사1138)	(사)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포항지회는 '99. 4월 초 포항시 소재 청솔밭圃폐식당에서 포항시지역 PC게임방 30개 사업자를 참석시켜 창립총회를 마친 후, 동 장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시간당 1,500~1,800 원 수준의 PC게임방 이용료를 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협정요금표"를 제작하여 4. 10.경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하였으며, 동 결정사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PC게임방 이용요금이 시간당 1,000~1,200원 수준에서 형성되자 7월중 포항시 소재 목화예식장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PC게임방 이용료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인상방안을 논의한 후, 동 장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PC게임방 이용료를 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다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표"를 다시 제작하여 7월 중순경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하여 포항시지역 PC게임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풍산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9전사1392)	풍산종합건설주식회사는 '97년 6월경부터 자신이 시공하여 분양하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소재한 풍산주상복합아파트의 광고카탈로그에 케이블 TV 수신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CA-TV) : 가정용 TV를 통해 NHK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CA-TV시스템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유익한 정보를 마음껏 즐기십시오."라고 표현하여 마치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전·충남지역을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단)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9. 12.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한법무사협회 및 13개 지방법무사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6단체0877)	대한법무사협회 및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무사회는 신규로 법무사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사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들의 회칙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는 후생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법무사회 가입금 및 후생공제회 가입금, 대한법무사협회 납부금을 포함한 소정의 가입비 또는 입회금을 납부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이 된 후 그 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입하여야 할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가서 입회절차를 밟도록 하였는데, 각 지방법무사회는 1999. 4월에서 5월까지의 기간동안 열린 정기총회에서 가입금액을 각각 의결하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징수하는 등 법무사업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지수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 위반	◎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시까지 해당 회칙 및 공제규칙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도록 함